관세청 종합 솔루션 YesFTA

FTA 핵심쏙쏙
활용 가이드북

대구본부세관
DAEGU MAIN CUSTOMS

CONTENTS

Chapter 01

WHAT FTA

FTA 2

FTA 현황 3

Chapter 02

WHY FTA

수입자이시면 4

수출자이시면 6

Chapter 03

HOW FTA

FTA 활용 요건 8

수출자 FTA 활용 절차 9

완제품 공급업체 FTA 활용 절차 23

Chapter 04

CHECK POINT

수출물품의 품목분류 24

협정 서식 작성법 26

FTA 특혜 사후적용 가능여부 27

Chapter 05

Q&A

수출품의 HS 확인 방법 28

제3국 송장의 C/O 발급 29

자율발급 30

세관의 FTA활용 지원 31

Chapter 06

SUPPORT FOR EXPORT

수출입기업 지원센터 32

수출지원 정책 33

해외통관애로 해소 사례 38

01 FTA란?

FTA의 개념

- 양국 또는 지역간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여 자유무역을 실현하기 위한 협정
-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협정은 체결 상대국과 교역물품에 대한 특혜관세(관세철폐 또는 인하)를 적용하는 협정

내용 및 범위

관세철폐 스케줄

얼만큼 주고 받을 것인가?

원산지 결정 기준

다른 나라와 어떻게 구별할까?

원산지 증명 규정

구별하는 절차는?

02 FTA 현황

우리나라 FTA 발효현황(16건, 56개국)

EFTA 4개국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ASEAN 10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이사, 필리핀,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EU 28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영국,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LAIA 4개국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 한-영 FTA ('21.1.1. 발효) : '21.1.1. 08:00 이후 영국 수출입물품에 대해 한-영 FTA협정 적용
▶ RCEP ('20. 11. 15. 서명) : 한국, 아세안 10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01 여러분이 수입자이시면

수입 신고 시,

▶ 상대국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소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 신청하면 관세 등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 인하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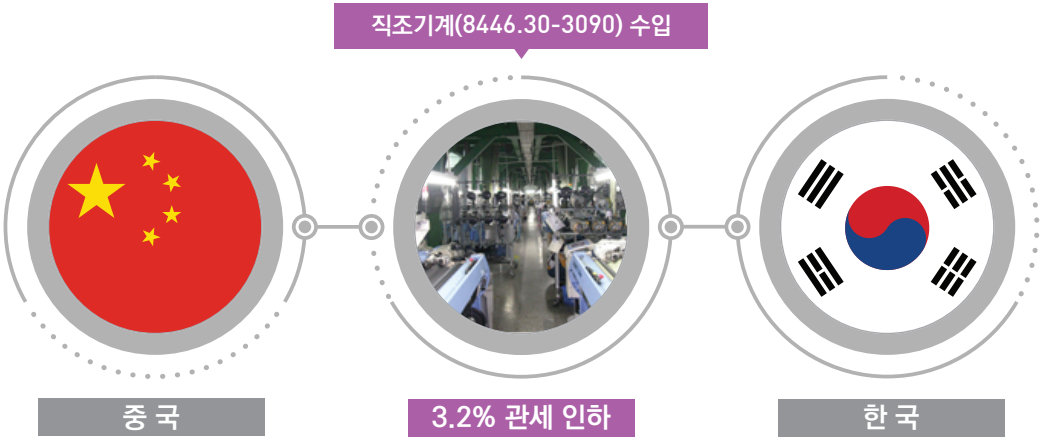

기본 세율 8% → 협정세율 4.8%
(FTA 활용)

수입 활용 절차

1. FTA협정 발효국 여부 확인하기
2. 품목번호(HS) 확인하기
3. FTA 관세혜택 확인하기
4.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 수취
5. 수입신고 및 협정 관세 적용 신청*
6. 수입신고수리 및 관련서류 보관하기
7. 수출·수입국 세관 원산지검증 통지**
8. 기한 내 요청자료 제출
9. 수출·수입국 세관 검증결과 통지

* 수입신고 시 C/O가 구비되지 않을 시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협정세율 사후 적용 가능

** ① 간접검증 방식(EU, 아세안, 인도 FTA 등) : 수출국 세관이 검증 통지
② 직접검증 방식(칠레, 미국FTA 등) : 수입국 세관이 검증 통지

02 여러분이 수출자이시면

수출 신고 시,

▶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해외 수입자에게 전달하면, 수입자가 수입국 통관 시 협정관세 적용으로 수입가격 인하 효과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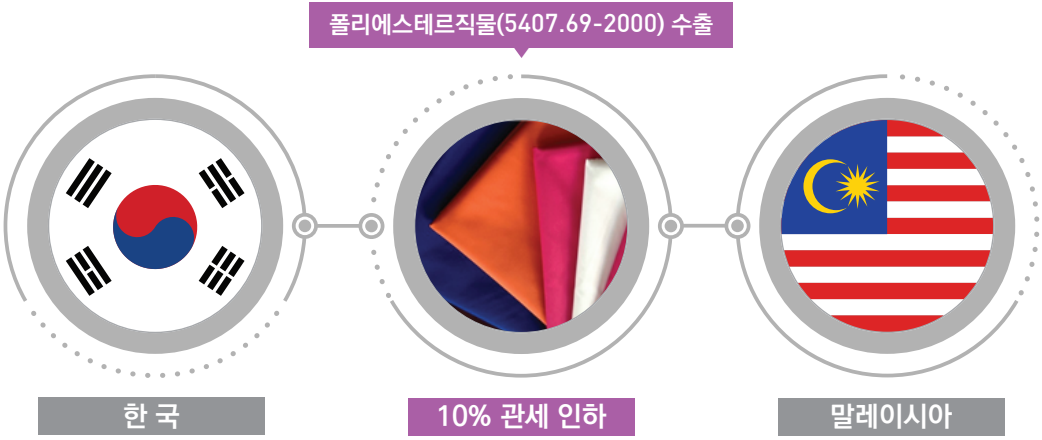

말레이시아 현지 수입통관 시 기본 세율 10% → 협정세율 0%
(FTA 활용)

수출 활용 절차

1. FTA협정 발효국 여부 확인하기
2. 품목번호(HS) 확인하기
3. FTA 관세혜택 확인하기
4. 원산지결정기준 확인하기
5. 수출신고 수리
6. 원산지 증명서(C/O) 발급 및 관련서류 보관
7. 수출·수입국 세관 원산지검증 통지
8. 기한 내 요청자료 제출
9. 수출·수입국 세관 검증결과 통지

* 간접검증 방식(EU, 아세안, 인도 FTA 등) : 수출국 세관이 검증 통지

* 직접검증 방식(칠레, 미국FTA 등) : 수입국 세관이 검증 통지

01 FTA 활용 요건

1. 거래당사자

▶ 당사국에 거주하는 수출입자 간에 거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또는 권한이 있고 검증 의무 부담하는 자

2. 양허품목

▶ 양허 대상 지정 품목

3. 원산지상품

▶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규정에 의거 원산지 상품

4. 직접운송

▶ 당사국간 직접 운송

5. 절차요건

▶ 협정 규정에 따라 원산지 증명하고 수입국에 협정세율 신청·적용

6. 서류보관

▶ 원산지증빙서류(원산지증명서, 그 밖의 원산지 서류·정보) 보관

02 수출자 FTA 활용 절차

❶ 수출국 및 ❷ 수출물품(세번부호) FTA 활용혜택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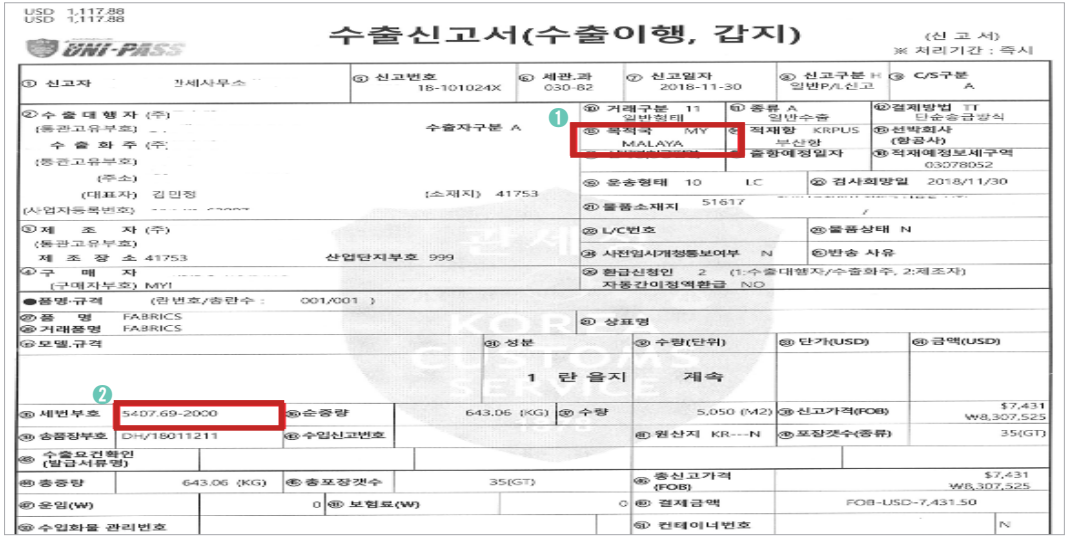

USD 1,117.88
USD 1,117.88

수출신고서(수출이행, 갑지)

(신 고 서)
※ 처리기간 : 즉시

① 신고자	⑤ 신고번호 18-101024X	⑥ 세관.과 030-82	⑦ 신고일자 2018-11-30	⑧ 신고구분 H 일반P/L신고	⑨ C/S구분 A

② 수출대행자 (주) (통관고유부호)	수출자구분 A	⑪ 거래구분 11 일반형태	⑫ 종류 A 일반수출	⑰ 결제방법 TT 단순송금방식
수출화주 (주): (통관고유부호)		⑬ 목적국 MY MALAYA	⑭ 적재항 KRPUS 부산항	⑱ 선박회사 (항공사)
(주소)			⑮ 출항예정일자	⑲ 적재예정보세구역 03078052
(대표자) 김민정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41753	⑯ 운송형태 10 LC	㉑ 검사희망일 2018/11/30
		㉒ 물품소재지 51617	
③ 제 조 자 (주) (통관고유부호) 제 조 장 소 41753	산업단지부호 999	㉓ L/C번호	㉔ 물품상태 N
		㉕ 사전임시개청통보여부 N	㉖ 반송 사유
④ 구 매 자 (구매자부호) MYI		㉗ 환급신청인 2 (1:수출대행자/수출화주, 2:제조자) 자동간이정액환급 NO	

●품명·규격 (란번호/총란수 : 001/001)

㉘ 품 명 FABRICS ㉙ 거래품명 FABRICS		㉜ 상표명			
㉚ 모델.규격	㉛ 성분 1 란 음지	㉝ 수량(단위) 계속	㉞ 단가(USD)	㉟ 금액(USD)	
㊱ 세번부호 5407.69-2000	㊲ 순중량 643.06 (KG)	㊳ 수량 5,050 (M2)	㊴ 신고가격(FOB) $7,431 W8,307,525		
㊵ 송품장부호 DH/18011211	㊶ 수입신고번호	㊷ 원산지 KR---N	㊸ 포장갯수(종류) 35(GT)		
㊹ 수출요건확인 (발급서류명)					
㊺ 총중량 643.06 (KG)	㊻ 총포장갯수 35(GT)	㊼ 총신고가격 (FOB) $7,431 W8,307,525			
㊽ 운임(W) 0	㊾ 보험료(W) 0	㊿ 결제금액 FOB-USD-7,431.50			
(51) 수입화물 관리번호		(52) 컨테이너번호 N			

말레이시아 한-아세안 FTA 체결국으로, 해당 협정 적용 가능

관세혜택 여부 확인

(1) 관세청 FTA포털(www.customs.go.kr/ftaportalkor/) 접속 → 왼쪽 중간 국가별 관세율표(상대국 세율) 조회 → 말레이시아, 2020년 선택 → 540769 입력 후 검색(돋보기) → 기본세율과 협정세율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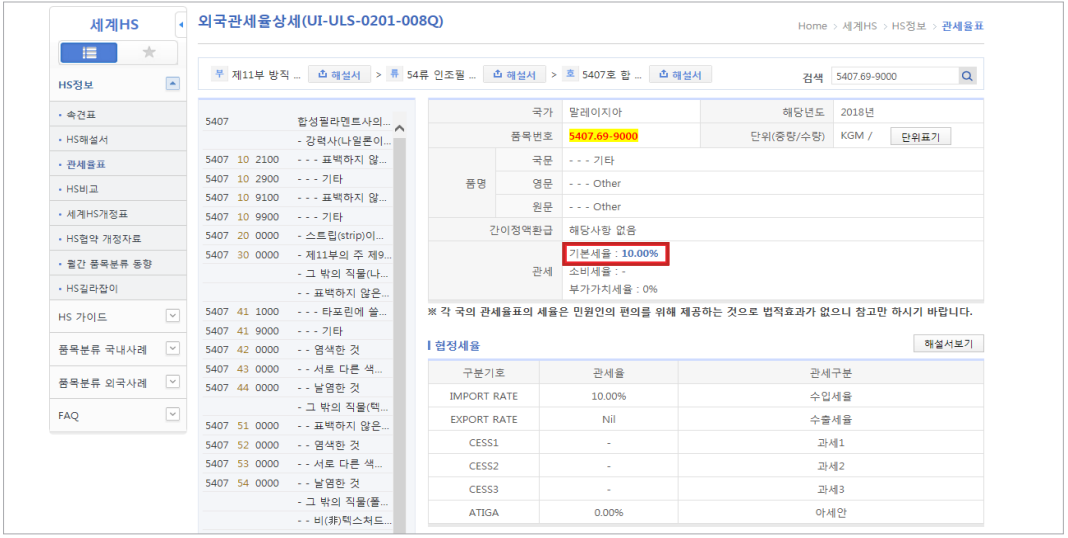

MFN세율(일반세율) 10%, 한-아세안 협정세율 0%로 FTA 관세혜택 10%

관세혜택 여부 확인

(2) 트레이드내비(tradenavi.or.kr) → 국가 : 말레이시아, HS코드 5407.69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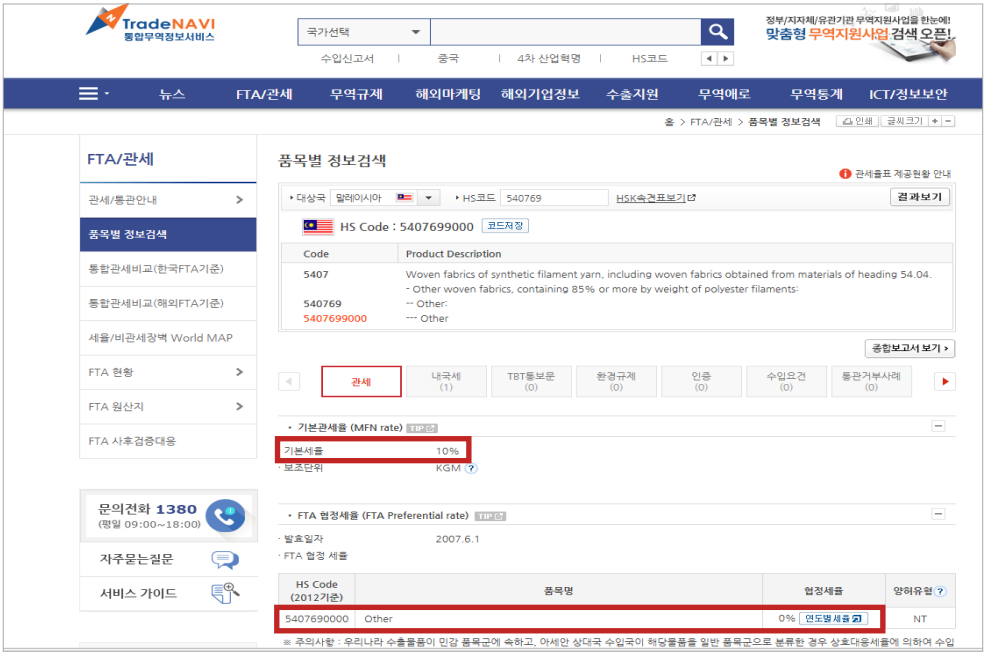

❸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같은 수출물품이라도 협정별로 원산지결정기준이 상이함으로, 협정별로 기준 확인

예 5407.69(폴리에스테르직물) 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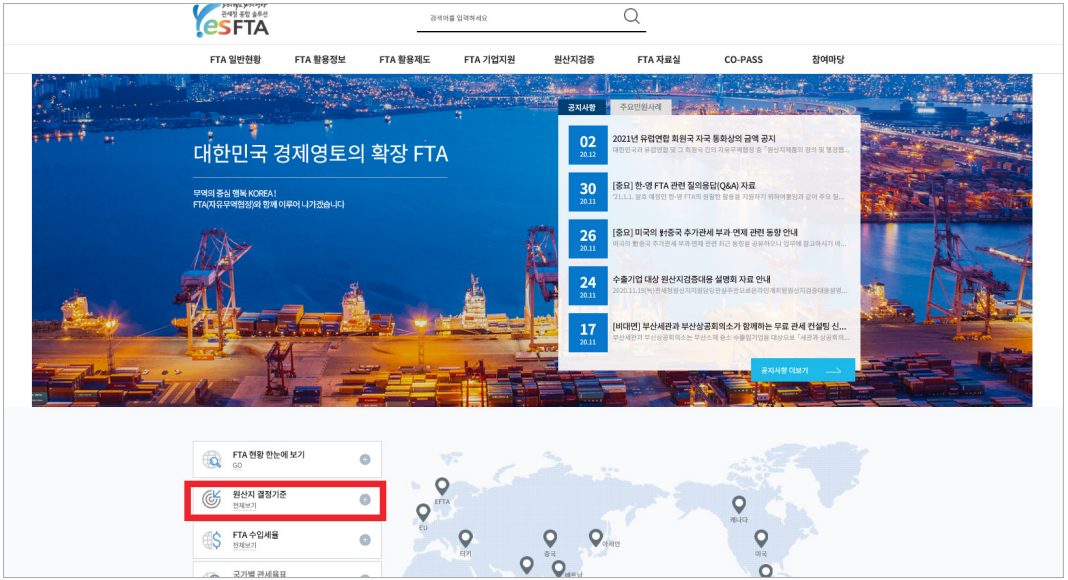

협정별 원산지 기준

ASEAN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CTH) 2. 40% 이상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RVC 40%)

E U 단사로부터 생산된 것(방직기준)

중 국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5106 내지 5110호, 5205내지 5206호, 제5401호 내지 5402호, 5404호, 5406호, 5509호 내지 5510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이상일 것(CTH(제외물품) 또는 RVC 40%

인 도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CTH and RVC 40%)

[참고] 원산지규정

(1) 세번변경기준

역내 생산과정에서 투입된 비원산지 재료의 HS와 상품의 HS가 일정 수준 이상 변경되면 그 상품을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

2단위 세번변경(Change of Chapter)	비원산지재료와 상품 2단위 세번부호가 바뀌면 원산지물품 인정
4단위 세번변경(Change of Tariff Heading)	비원산지재료와 상품 4단위 세번부호가 바뀌면 원산지물품 인정
6단위 세번변경(Change of Tariff Sub-Heading)	비원산지재료와 상품 6단위 세번부호가 바뀌면 원산지물품 인정

(2) 부가가치기준

역내에서 일정한 수준의 부가가치가 창출된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

역내부가가치 기준(RVC)	BU(Build-Up, 집적법)	부가가생산에 사용한 원산지재료비가 상품의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 % 이상 부가가치비율(%)= 원산지재료비/상품가격*100
	BD(Build-Down, 공제법)	상품의 가격에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 이상 부가가치비율(%)= (상품가격-비원산지재료비)/상품가격*100
	NC(Net Cost, 순원가법)	상품의 순원가에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 이상 부가가치비율(%)= (순원가-비원산지재료비)/순원가*100
역외부가가치 기준(MC)	MC(Imports Contents)	비원산지재료비가 상품가격의 **% 이하 부가가치비율(%)= 비원산지재료비/공장도가격*100

(3) 가공공정기준

특정 가공공정을 수행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

예 섬유 : 방적, 제직기준

❹ 원산지판정

▶ BOM을 작성하여 협정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정

(1) BOM 작성(예시 : 5407.69)

완제품 내역

제품명	모델/규격	HS CODE	수입국	적용협정	EXW가격	FOB가격
폴리에스테르 직물	5065 Micro mint	5407.69	말레이시아	한-아세안	500	600

완제품 생산에 투입 된 원재료 사용 내역

구분	품명	규격	단가(원)	소요량	가격(원)	HS CODE	구매처	원산지
원재료	yarn	Polyester DTY 50/144F	100	1	100	5402.33		KR
	yarn	Polyester DTY 65/204F	100	1	100	5402.33		KR
	Disperse dyes	-	50	1	50	3204.11		미상

❹ 원산지판정

(2)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확인

아세안 협정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선택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CTH)

→ 완제품(5407)과 비원산지 재료(1가지)의 4단위 세번이 변경되었으므로 기준 충족됨 : 한국산

* 단, 원산지재료는 고려하지 않고 원산지확인서로 증빙 필요

40% 이상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RVC 40%)

조건 한국 부가가치기준 : 공제법 혹은 집적법 중 유리한 것, 상품가격 : FOB가격

계산 **공제** | (상품가격-비원산지재료비)/상품가격 = (600-50) / 600 = 91.7% :한국산

집적 | 원산지재료비/상품가격 = 200 / 600 = 33.3% : 비역내산

→ 공제법 적용으로 부가가치기준이 충족되므로 한국산

EU 협정

단사로부터 생산된 것(방직기준)

조건 단사로부터 생산, 즉 방적을 역내에서 하는 조건

판정 화학재료에서 용융·방사하여 5402.33(합성필라멘트사)를 직접 방적했거나, 국내에서 방적한 사를 구입한 경우 공급업체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취했다면 원산지기준 충족됨 → **한국산 판단 가능**

중국 협정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5106 내지 5110호, 5205내지 5206호, 제5401호 내지 5402호,5404호, 5406호,5509호 내지 5510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이상일 것(선택기준)

4단위 세번변경기준

→ 완제품과 비원산지 재료 4단위 세번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산지기준 충족되어 한국산 판정

* 단, 제외물품은 한국산이어야 하는데, 5402.33이 한국산이므로 충족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이상일 것

조건 한국 부가가치기준 : 공제법, 상품가격 :FOB가격

계산 **공제** | (상품가격-비원산지재료비)/상품가격 = (600-50) / 600 = 91.7% :한국산

→ 부가가치기준이 40% 이상(91.7%) 이므로 기준 충족되어 한국산

❺ C/O 발급

협정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C/O) 발급

주 체 ▶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중국, 베트남으로 수출 시 기관(세관,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고, 그 외 협정체결국 수출 시 수출자 등의 자율발급

※ FTA 체결국에 따라 기관발급과 수출자 등 자율발급으로 구분

시 기 ▶ 건별 수출신고수리 이후 선적 전, 선적시, 선적 이후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신청

절 차

1. 관세청 uni-pass 접속(unipass.customs.go.kr)
2. 로그인 후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FTA' 선택
3. 세부 항목에서 'FTA 원산지증명신청' 선택
4. FTA 원산지증명서 신청 화면을 순차적으로 등록
   - 신청개요, 공통사항, 물품내역 등
5. 신청서 작성 시 관련 원산지증빙서류 업로드 필요
   - (업로드)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완제품을 국내기업에 공급받은 경우에 한함), 원산지소명 입증 서류 (BOM, 제조공정도, 구매영수증·세금계산서·국산재료의 원산지확인서 등 원재료 구입 입증 서류)

[참고] 원산지증명 발급 전자신고 절차

(1) 통관고유부호 발급

통관고유부호란 수출입 시 사용하실 수 있는 번호로 유니패스라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용자등록없이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합니다.

(2) 신고인부호 발급

신고인부호는 기업(개인)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이용해 전자수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인에게 부여하는 통관부호입니다.

전자통관시스템에서 회원가입을 진행하시면서 신고인 부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 수출입신고 신고인부호 : “12345”

발급 절차

❶ uni-pass 통관포털 상단 아래 회원가입 클릭 후 회원유형 선택

❷ 약관동의 및 본인인증 ❸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❹ 업체정보 ❺ 사용자정보

❻ 부호 및 서비스 신청

※ 사용자부호 : 수출통관, 관세환급, 수출입화물 등 이용 시 세관승인 필요

※ 공인인증서 : 사업자로 발급받은 범용, 관세청 통관포털용, 인터넷뱅킹용 인증서

❼ SMS 신청 ⇒ 완료

유내패스 서비스종류 및 업체유형 선택

업무유형	서비스종류	업체유형	인증서
수입신고 수출신고	수출입통관 정보조회 증명서발급	관세사:수출입신고자(관세사등) 자가통관업체:무역업체, 수출입신고자(관세사등)	유
관세환급 제증명 수출갈음	관세환급 정보조회, 증명서발급	관세사:수출입신고자(관세사등) 자가통관업체:무역업체, 수출입신고자(관세사등)	유
통관단일창구 (요건/검역신청)	정보조회 증명서발급, 요건신청	선택하지 않음	유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보세운송필증	정보조회 증명서발급	선택하지 않음	유
원산지증명서발급	수출입통관 전자민원신청 정보조회 증명서발급	관세사:수출입신고자(관세사등) 자가통관없체:무역업체, 수출입신고자(관세사등)	유
FTA인증 수출자	수출입통관 전자민원신청 정보조회 증명서발급	관세사:수출입신고자(관세사등) 자가통관업체:무역업체, 수출입신고자(관세사등)	유

(3) 원산지증명서발급 신청서 작성

전자통관시스템(unipass.customs.go.kr)에서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FTA → FTA원산지증명 신청을 클릭 후 순차적으로 작성하십시오.
오류가 나는 경우 유니패스 기술지원 센터(1544-1285)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급 절차

❶ 신청분야

기본정보 (전송구분, 선적후발급, 원산지특례 등)	신고인정보 (신고인부호, 신청인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❷ 공통사항

수출자정보	공급자정보	수입자정보
관련수출신고번호	운송정보	송품장정보
수출자신고	첨부파일 (원산지증명 ·송품장정보구비서류 : BOM, 제조공정도, 원산지확인서 등)	

❸ 물품내역

수출물품 원산지결정기준	총합계정보	물품정보

[참고] 유니패스 발급

- 로그인 시 회원가입 필요(회원가입 클릭 시 사용자등록 화면으로 전환되며, 순차적 클릭)
- FTA C/O발급 신청 매뉴얼
  유니패스 → 고객센터 → uni-pass 매뉴얼 → 신고서작성목록(FTA) 매뉴얼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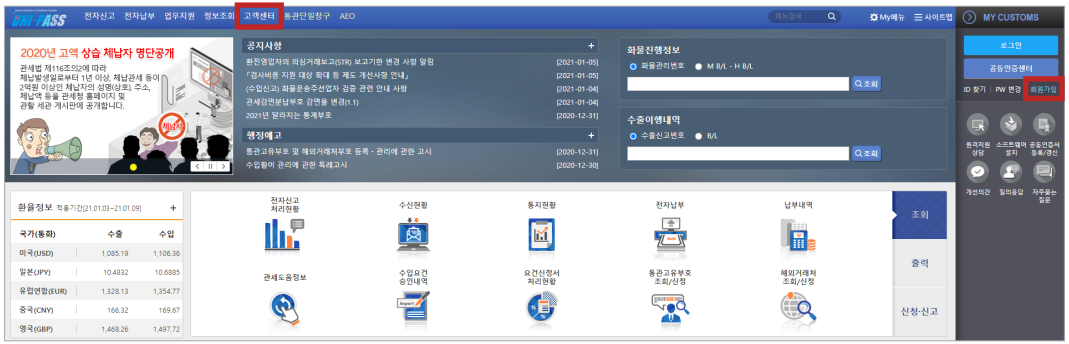

[참고] 원산지소명서

▶ (주요생산공정)은 제조공정도, (원재료명세서)는 BOM과 일치

원 산 지 소 명 서

1.수출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전화 / 팩스	
	주소(전자주소)			
2.생산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전화 / 팩스	
	주소(전자주소)			

품 종 명 세

3.품명/규격			4.HS No.	
5.물품가격	가격조건	FOB ( ), Ex-Works ( )	6.원산지 결정기준	
7.주요생산공정	총 액			

원 재 료 명 세 서

8.연번	9.재료명	10.HS No.	11.원산지	12.가 격 수 량	12.가 격 가 격	13.공급자 (생산자)
14. 합 계		원산지재료(국산)				
		비원산지재료(수입산)				
		합 계				

원 산 지 인 정 요 건 검 토

15.완전생산기준 충족여부	예 ☐ 아니오 ☐	16.세번변경기준 충족여부	예 ☐ 아니오 ☐
17.부가가치기준 충족여부	예 ☐ 아니오 ☐	(부가가치비율 : %)	
18.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동시 적용품목	예 ☐ 아니오 ☐	19.최소기준 적용여부	예 ☐ 아니오 ☐
20.누적기준 적용여부	예 ☐ 아니오 ☐	21.역외가공기준 적용여부	예 ☐ 아니오 ☐
22.직접운송 여부	예 ☐ 아니오 ☐	23.기 타	예 ☐ 아니오 ☐
24.원산지 결정	충 족 ( )	불 충 족 ( )	

( ) 자유무역협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작성·제출합니다.

작 성 자 : (서명)
직 위 :
상 호 및 주 소 :
작 성 일 자 :

03 완제품 공급업체 FTA 활용 절차

국내 완제품 공급업체의 FTA 활용

❶ 수출국 및 → ❷ 원산지결정 기준 확인 → ❸ 원산지판정 → ❹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 후 원산지 소명서와 함께 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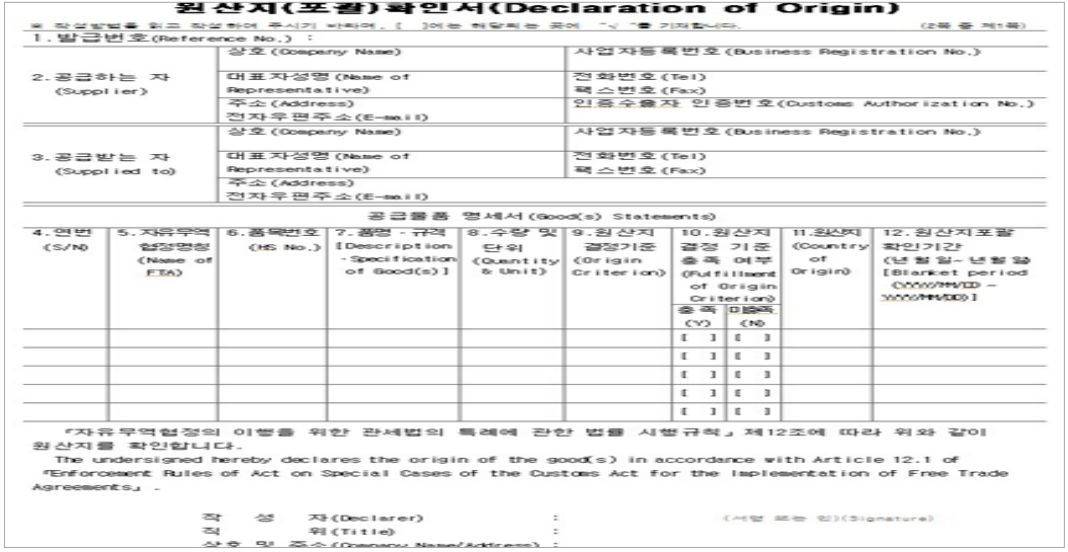

원산지(포괄)확인서(Declaration of Origin)

1. 발급번호(Reference No.) :		
2. 공급하는 자 (Supplier)	상호(Company Name)	사업자등록번호(Business Registration No.)
	대표자성명(Name of Representative)	전화번호(Tel) 팩스번호(Fax)
	주소(Address) 전자우편주소(E-mail)	인증수출자 인증번호(Customs Authorization No.)
3. 공급받는 자 (Supplied to)	상호(Company Name)	사업자등록번호(Business Registration No.)
	대표자성명(Name of Representative)	전화번호(Tel) 팩스번호(Fax)
	주소(Address) 전자우편주소(E-mail)	

공급물품 명세서(Good(s) Statements)

4. 연번 (S/N)	5. 자유무역협정명칭 (Name of FTA)	6. 품목번호 (HS No.)	7. 품명·규격 [Description·Specification of Good(s)]	8. 수량 및 단위 (Quantity & Unit)	9. 원산지 결정기준 (Origin Criterion)	10.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 여부 (Fulfillment of Origin Criterion)		11. 원산지 (Country of Origin)	12. 원산지포괄 확인기간 (년월일-년월일 [Blanket period (YYYY/MM/DD - YYYY/MM/DD)]
						충족 (Y)	미충족 (N)		
						[ ]	[ ]		
						[ ]	[ ]		
						[ ]	[ ]		
						[ ]	[ ]		
						[ ]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원산지를 확인합니다.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e origin of the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1 of "Enforcement Rules of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s".

작 성 자(Declarer) :
직 위(Title) :
상호 및 주소(Company Name/Address) :

(서명 또는 인)(Signature)

01 수출물품의 품목분류가 정확한지 확인

품목분류 유의사항

- 수출물품의 품목분류를 확인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필요
- 수출국과 수입국의 HS가 상이한 경우 수입국기준으로 분류하여 C/O 발급하는 것이 원칙

HS CODE란?

- 세계관세기구(WCO)가 중심이 되어 체결한 HS협약에서 상품별로 부여한 코드
- 6단위까지는 국제적으로 공통된 코드를 사용하나 7단위 이하는 국가별로 세분하여 각기 달리 사용
- 우리나라는 10단위까지 세분화하고 있고, 미국, 중국도 10단위, EU는 8단위를 사용
- 6단위 분류는 세계공통이나, 수입국의 품목분류 해석이 상이할 경우 수입국 기준으로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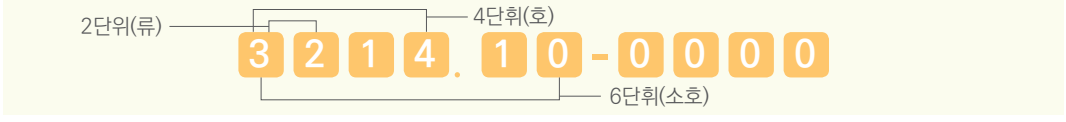

- 수입국에서 자의적으로 고세율 세번분류 등의 통관애로가 있을 시 지원센터 문의와 관세평가분류원 HS 국제분쟁 신고접수로 해결

[참고] 수출국과 수입국의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시 업무처리 지침

▶ 우리나라와 협정상대국의 품목분류번호(HS번호)가 다를 때 수입국의 HS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서류가 있는 경우 수입국의 HS번호를 기재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인증수출자 추가 인증 가능*

* 단, 수입국 HS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요건을 갖춘 경우 인증 추가 가능

▶ 공식 서류

- 수입신고필증
- 품목번호 확인서
- 사전심사결정서
- 협정상대국 관세·품목분류표에 명확하게 규정된 품목임을 입증하는 서류·정보

02 협정에서 정하는 서식, 작성방법에 맞는지 확인

확인사항

❶ 협정별 발급 서식이 맞는지 등 확인

- (협정 서식) FTA포털(fta.customs.go.kr)의 FTA자료실 → 협정별 서식 참조

❷ 신청 발급 및 소급발급 문구 등 확인

- 협정별로 신청발급과 선적후 발급으로 구분됨
-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 소급발급할 경우 C/O 신청 시 발급유형을 선적후발급에 체크하여 신청

(C/O 인쇄 시"ISSUED RETROACTIVELY"로 기재되어 출력)

협 정	신청발급 기간
아 세 안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선적일 포함하지 않음)
인 도	선적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선적일 포함)
중 국	선적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선적일 포함하지 않음)
베 트 남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선적일 포함)

▶ 근무일 계산 시 국경일, 명절, 대체휴일 등을 고려하여 정당하게 C/O를 발급하였으나 상대국에서 수출국의 사정을 몰라 특혜적용에 문제 발생 시 지원센터 접수하여 해결

03 FTA 특혜 사후적용 가능 여부 확인

확인사항

▶ 우리나라는 수입 통관 당시 C/O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내 협정관세 사후적용이 가능하나, 각 체결국별로 사후적용 여부가 상이하여 사전 확인 필요

* 중국의 경우 수입통관 시 사후적용 의사표시 및 담보 제공 의무

** 아세안은 10개 회원국별 규정이 상이

국 가	신청기간	요 건
브루나이	수입후 1년 이내	수입신고시 사후신청 의사표시
캄보디아	소급기간 없음	수입신고시 C/O 제출
인도네시아	소급기간 없음	수입신고시 C/O 제출
라오스	수입후 1년 이내	수입시 소급적용 의사표시 및 담보제공
말레이시아	수입후 1년 이내	수입시 소급적용 의사통지
미얀마	소급기간 없음	수입신고시 C/O 제출
필리핀	수입일 이후 6개월 이내	수입시 소급적용 의사통지 MFN세율과 AKFTA 협정세율간의 차이에 상응하는 사후보증서* 제시 * 수입 후 6개월이내 C/O가 제시되면 이 보증서는 취소, 미제시되면 보증서 몰수
싱가포르	수입후 1년 이내	수입시 소급적용 의사통지
태국	수입후 1년 이내	수입시 소급적용 의사통지
베트남	수입신고후 30일 이내	수입시 소급적용 의사통지

01 수출물품의 HS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확인방법

▶ 관세사 상담, 관세청 세계HS(품목분류) 검색 외 해외 수입자에게 수입당사국에서의 HS를 문의하는 방법과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할 것을 권고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의 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하여 법적 효력이 있는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하도록 한 제도

신 청 수출입하려는 자, 제조자, 관세사·관세법인 등

방 법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서(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견본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터넷,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인터넷 접수 : UNI-PASS(www.unipass.customs.go.kr)-전자신고-신고서작성-품목분류-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

제출항목
1. 신청서(갑지 :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서, 을지 : 물품설명서)
2. 신청물품 견본(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미제출사유서/대체사진)
3. 증빙서류

02 제3국 송장인 경우 C/O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확인사항

- 수출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서 송장이 발급되어 아세안·중국 등에 수출된 경우, C/O상에 제3국 송장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함
- FTA 원산지증명서 신청서 공통사항 입력 시 제3국 송장(Third party)을 체크, 하단에 송장을 발행한 회사의 상호 및 국가명을 해당란에 입력하여 발급 신청
  ⇒ C/O ⑬Third party에 체크 ⑦란에 송장 발급 회사의 상호 등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

한-아세안 서식 작성방법 및 제3국송장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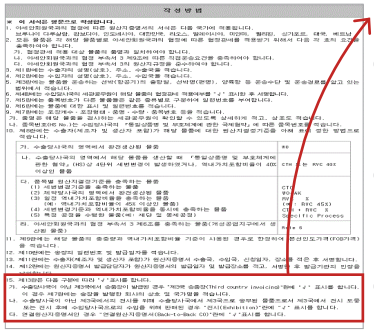

15. 제 13란은 다음 구분에 따라 "√"표시를 합니다.

가 수출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서 송풍장이 발급된 경우 제3국 송풍장(Third country invoicing)"란에 "√"표시를 합니다.
이 경우 제7란에는 송장을 발행한 회사의 상호 및 국가명을 적습니다.

나 수출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서의 전시를 위해 수출당사국에서 제3국으로 송부된 물품으로서 제3국에서 전시 도중 또는 전시 후에 수입당사국으로의 수입을 위해 판매된 경우 "전시(Exhibition)"란에 "√"표시를 합니다.

다 연결원산지증명서인 경우 "연결원산지증명서(Back-to-Back CO)"란에 "√"표시를 합니다.

03 자율발급 하는 협정의 경우 C/O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작성방법

▶ 기관발급 협정(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중국, 베트남)을 제외한 나머지 협정에 사용 가능, 사전에 수출(완제품 공급·구매물품 포함)물품에 대해 원산지판정을 하여 원산지가 '한국산'임이 서류로 입증된 경우 수출자 등이 자율 발급함

❶ 미국 수출

8가지 사항(수출자, 수입자, 생산자, 물품의 HS품목번호 및 품명, 상품이 원산지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증명일자, 유효기간, 증명인의 성명)이 있으면 특정 서식없이 발급할 수 있으나 수출자 편의를 위해 권고서식 하달·시행

* 협정 서식 : FTA포털(fta.customs.go.kr)의 FTA자료실 → 협정별 서식 참조

❷ EU 수출 : INVOICE, PACKING LIST 등에 원산지문안을 기재하여 작성

단, 수출물품이 6,000유로 이상인 경우 인증수출자(세관에서 인증받은 수출자)만 작성 가능

한국어본 이 서류(세관인증번호...(1))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제품은 ...(2))의 특혜원산지 제품임을 신고한다.

영어본 The exporter of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2) preferential origin.

04 세관에서 FTA 활용 지원은 어떤 것이 있나요?

FTA 활용지원

▶ 기업의 FTA 활용을 높이고자 각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FTA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❶ 찾아가는 FTA 센터

세관 방문이 어려운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이 FTA 활용이 필요한 경우 전화, 메일로 요청하시면 기업을 방문해 컨설팅 해드립니다.

* 대구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53-230-5181~5186, E-MAIL : daegusupport@korea.kr

세관명	찾아가는 FTA센터 담당자	팩스	E-mail
인천본부세관	032-452-3644	032-891-9203	incheonsupport@korea.kr
서울본부세관	02-510-1382	02-548-0211	seoulsupport@korea.kr
부산본부세관	051-620-6956	051-620-1118	busansupport@korea.kr
대구본부세관	053-230-5183	053-230-5599	daegusupport@korea.kr
광주본부세관	062-975-8197	062-975-3113	gwangjufta@korea.kr
평택직할세관	031-8054-7042	031-8054-7046	fta016@korea.kr

❷ 예산컨설팅사업

FTA 활용에 애로가 있는 기업에 컨설턴트(관세사)를 파견하여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 일정은 각 본부세관 공지사항 참조, 기업의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기업 자부담 있음

❸ FTA 교육사업

무료로 FTA 교육을 제공하며 상세한 내용은 www.yesftaedu.or.kr 확인

01 수출입기업 지원센터

▶ 우리나라 수출입기업의 FTA·AEO·해외통관애로를 쉽고 빠르게 맞춤형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

관세청 FTA 포털

↓

수출입기업 지원센터

↓

상담신청

관세청 FTA포털
(포털에서 검색)

맞춤형 지원

기업상담전문관 또는
FTA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맞춤형
서비스 제공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5층, 대구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연락처	TEL. 053-230-5182~7

02 수출지원정책

❶ 찾아가는 수출지원센터

지역 산업공단, 농공단지 등 세관 방문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드립니다.

▶ 사업 내용

FTA 활용지원	YES FTA 수출지원센터
·업체방문, E-mail, 전화상담 등을 통한 FTA활용 지원 ·신속 정확한 FTA활용 정보제공 및 기업상담 진행 ·FTA 전문 상담인력 구성 및 집중 컨설팅 제공	·FTA 이동센터가 농공단지 등 FTA 사각지대 소재 기업에 직접 찾아가서 1:1 맞춤형 컨설팅 제공 ·FTA 활용, 인증수출자 인증 등 관세행정 전반 현장교육

▶ 지원 신청

- 관세청 YES FTA 포털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 (네이버 등에서 '관세청 FTA 포털'검색)
- 세관 연락처

세관명	전화번호	E-mail
대구세관	053-230-5183	daegusupport@korea.kr
울산세관	052-278-2238	hany11@korea.kr
구미세관	054-469-5616	bys01@korea.kr
포항세관	054-720-5713	customs0523@korea.kr
속초세관	033-820-2126	wglee79@korea.kr
동해세관	033-539-2676	gil7648@customs.go.kr

❷ YES FTA 전문교육

중소기업 FTA 활용 제고 및 원산지 관리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교육과정

사업명	일정
YES FTA 전문교육 운영	연 중(3월~)
수요자 맞춤형 전문교육(현장 방문)	연 중(3월~)
온라인교육(C/O 작성하기, 인증수출자 신청하기 등 4개 과정)	연 중(3월~)

▶ 사업 내용

YES FTA 전문교육 운영	·기업실무자/임원/공급망 등 맞춤형 교육 커리큘럼 운영(3개 분야, 12개 과정) ·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http://yesftaedu.or.kr)에서 교육과정 확인·수강신청·수료증 발급
현장중심 교육	·개별기업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보급 및 맞춤형 기업방문 FTA 현장 교육 ·중소·중견기업, 공급망 FTA 활용 역량 제고

▶ FTA 전문교육 신청

- 홈페이지 : http://yesftaedu.or.kr
- 대표전화 : 1544-5702

❸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중소기업의 FTA 원산지 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상담비용을 지원, FTA 전문 컨설턴트(관세사)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컨설팅 유형

원산지 검증지원	·원산지 검증 대응 컨설팅 – 원산지검증 대비 모의검증 실시, 관련 서류보관실태 진단 등

▶ 사업 안내

사업기간	·매년 2월 ~ 11월(예산 소진 시까지)
현장중심 교육	·상호출자 제한기업이 아닌 중소·중견기업 ·직전 2년간 관세청·중소벤처기업부·산업부 및 지자체의 FTA분야 예산지원 컨설팅을 비수혜 기업
지원금액	·업체당 최대 20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대구본부세관 홈페이지 공고 확인 후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신청

- 홈페이지 : www.customs.go.kr/daegu/
- 대표전화 : 1544-5702

❹ AEO 공인획득 및 사후관리 지원

KOREA AEO 공인을 획득하시면 국내 및 AEO 상호인정약정(MRA) 체결국 통관시 물품 검사비율 축소, 서류심사 간소화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AEO 제도	무역과 관련된 업체들 중 관세당국이 법규준수 등을 공인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를 의미
AEO 상호인정약정 (MRA)	자국에서 인정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상호 합의한 세관절차 상 특례를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으로 2020년 현재 미국, 일본 등 19개국과 체결

※ MRA 체결국 :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일본, 뉴질랜드, 중국, 홍콩, 멕시코, 터키, 이스라엘, 도미니카공화국, 인도, 대만, 태국, 호주, UAE, 페루, 우루과이

▶ AEO 지원 내용

기업별 전담직원 상시 1:1 지원	·기업별 전담직원(AM)을 지정하여 AEO 기업의 사후관리 상시지원
세관연락관을 통한 애로해결지원	·AEO MRA 세관연락관을 지정하여 체결 상대국에서 통관절차 애로 발생시 해결 지원

▶ 공인 기준

- 법규준수, 내부통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4개 분야 심사

▶ 연락처

- 대구세관 053-230-5185 | 한국AEO진흥협회 www.aeo.or.kr

❺ 해외통관애로 신속 해소 지원

해외통관애로는 수출 이후 해외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를 관세당국에 외교 문서(서한문) 발송 및 해외주재 관세관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해소 지원합니다.

해외통관애로란

우리 기업이 수출이후 해외에서 수입통관 단계 혹은 그 이후 단계에서 FTA 특혜 적용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HS 상이 등 사유로 원만하게 FTA 특혜 적용을 받지 못하는 애로 상황

▶ 해외통관애로 해소 지원

FTA 특혜세율 적용 배제	·해외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서 상 사소한 오류로 FTA 특혜세율 적용 거부 시 세관에서 서한문 발송, 해외주재 관세관 등을 활용해 통관애로 신속 해소
수입국 품목분류 이견	·수출국 수입통관 시 수출 품목분류와 상이해 세율 적용에 분쟁이 있을 경우 관세평가분류원 HS 분쟁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대응 가능

▶ 해외관세관 파견 국가

- 미국(LA,워싱턴) 중국(북경, 상해, 칭도, 대련), 태국(방콕), 베트남(호치민), 인니(자카르타), 인도(뉴델리), 홍콩, 일본, EU 등 9개국 13곳

▶ 연락처

- 대구세관 053-230-5185 | 지원센터 이메일 daegusupport.korea.kr

5-1 빈번 발생 해외통관애로 사례

❶ 품목분류 해석 상이에 따른 FTA특혜세율 미적용

국가 캄보디아(한-아세안 FTA)

개요 A사에서 캄보디아로 수출한 물품의 HS6단위가 우리나라와 달라 FTA적용을 받지 못함
(우리나라: 제 8424.49호, 세율 0% ↔ 캄보디아 : 제 8705.90호, 세율 135%)

해소
· 대구세관 검토결과 제8424.49호로 분류 가능
· 관세평가분류원 질의·회신으로 제 8424.49호로 확정
· 대구세관은 우리 측 분류의견서를 캄보디아 세관 송부 및 설득으로 제 8424.49호로 통관

결과 약 5천 5백만 원의 관세 절감

❷ C/O상의 품목번호 불인정으로 통관유보

국가 인도(한-인도 CEPA)

개요 B사에서 인도세관에 제출한 HS2007 기준으로 작성된 C/O를 인정하지 않고, HS2017기준으로 수정하여 제출하지 않을 시 관세부과 통보

※ 현행 한-인도 CEPA협정은 C/O세번을 HS2007기준으로 표기하도록 규정(HS개정내용 미반영)

해소

· 인도 주재 관세관이 직접 인도 관세청을 방문, 현행 CEPA 협정상 C/O HS 작성기준 설명 및 신속한 해결을 요청하는 서한문 전달

· HS2007기준으로 작성된 C/O를 인정하는 통관

결과 약 4억 원 상당의 관세 절감

❸ 인도 관세법 개정(9.21)으로 통관단계 원산지 검증 강화 조치 C/O상의 원산지결정기준 표기 불인정으로통관유보

국가 인도(한-인도 CEPA)

개요 E사에서 인도로 수출한 물품의 한-인도 CEPA규정 상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세번변경기준(CTH)임에도 불구, 인도세관에서 C/O상의 원산지결정기준 표기를 조합기준(CTH+RVC35)으로 요구하며 제출한 C/O를 불인정하며 관세부과 통보

해소 인도 관세청 본부 및 담당 세관에 한-인도 CEPA상의 원산지결정기준 관련 규정 예시 등을 포함하여 신속한 해결을 요청하는 서한문 전달

결과 약 3천만 원 상당의 관세 절감

FTA 핵심쏙쏙
활용 가이드북

발 행 일 2020년 12월
발 행 처 대구본부세관
발 행 인 대구본부세관장 김재일
기 획 대구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 김익헌
편 집 대구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직원 일동
(박철우, 박기현, 김동석, 조남희, 이병엽, 박지은, 김상욱)
대구시 달서구 화암로 301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5층
Tel. 053-230-5181~5186 Fax. 053-230-5609
디자인·인쇄 (주)아미고디자인 www.amigodesign.co.kr
Tel. 02-517-5043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1879
대구본부세관
DAEGU MAIN CUSTOMS